
2023학년도 아주대학교 입학전형 시행계획

※ 본 입학전형 시행계획은 관계 법령 및 대학입학전형·홍보위원회 심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2023학년도 수시 및 정시모집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1. 4.



아주대학교

주요 변경 사항

구분	주요 변경 사항
수시	<p>학생부 교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선발인원 유지: 235명 ② 고교추천전형: 추천인원 제한 없음 ③ 수능최저학력기준 완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계열 : 국어, 수학, 영어, 탐구(과탐 중 1과목) 중 2개 영역 등급 합 5 이내 · 인문계열 : 국어, 수학, 영어, 탐구(과탐, 사탐 중 1과목) 중 2개 영역 등급 합 5 이내 ④ 등급 없는 과목 미반영 ⑤ 계열, 학년, 과목별 가중치 폐지(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반영) <p>학생부 종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학생부종합(ACE전형) 선발 소폭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41명→543명(▲2명) ② 학생부종합(다산인재전형) 선발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0명→154명(▼26명) ③ 학생부종합(SW융합인재전형) 선발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프트웨어학과 30명 선발 ④ 학생부종합(고른기회1전형) 소폭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79명→81명(▲2명) <p>논술 위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논술(논술우수자전형) 선발 축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발인원 축소: 187명→169명(▼18명) · 수능최저미적용 유지(단, 의학과 제외)
정시	<p>수능 위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정시 선발 확대(정원내 기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72명→622명(▲50명) ② 의학과/국방디지털융합학과 정시 나군 선발 / 그 외 학과 다군 선발 ③ 영어 반영비율 축소: 자연계열1, 인문계열1,2 20%→15% ④ 계열별 수능 영역 지정 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연계열: 국어, 수학(미적분, 기하 중 택1), 영어, 탐구(과학탐구 중 택2) · 인문계열: 국어, 수학, 영어, 탐구(사탐, 과탐 중 택2) *단, 특성화고졸업자전형은 직탐 응시 가능 ⑤ 탐구 자체 변환점수 반영 유지 ⑥ 간호학과 교차전형(다군 일반전형4) 선발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문계열 선발 10명→12명(▲2명)

모집시기별 선발인원 및 전형유형, 방법

시기	유형	전형	모집인원	전형방법(비율)	비고	
수시 (65.7%)	재외 국민 (정원외)	전체(의학과, 간호학과 제외)	34	(일괄) 수강능력시험 100	모집인원외: 면접100	
		의학과	2*	(1단계) 수강능력시험 100(10배수)		
		간호학과	1	(2단계) 1단계 60 + 면접 40		
		소계	37			
	학생부 교과	학생부교과(고교추천전형)	235	(일괄) 학생부 교과 100	-	
		소계	235 (11.0%)			
	학생부 종합 고 른 기 회	학생부종합(ACE전형)	543	(1단계) 서류종합평가 100(3배수)	▲2	
		학생부종합(SW융합인재전형)	30	(2단계) 1단계 70 + 면접 30		
		학생부종합(다산인재전형)	154		▼26	
		학생부종합(고른기회1전형)	81	(일괄) 서류종합평가 100	▲2	
		학생부종합(고른기회2전형)	42		▼2	
		학생부종합(특수교육대상자전형) (정원외)	10	(1단계) 서류종합평가 100(3배수)		
		학생부종합(특성화고등을졸업한 재직자전형)(정원내외)	105**	(2단계) 1단계 70 + 면접 30		
	소계	965 (45.2%)				
	논술 위주	논술(논술우수자전형)	169	(일괄) 논술 80 + 학생부 교과 20	▼18	
		소계	169(7.9%)			
	실기/ 실적 위주	실기/실적(체육우수자(축구)전형)	10	(일괄) 학생부(교과,출결) 5+ 실적 40+실기 30 + 면접 25		
		실기/실적(국방IT우수인재1전형)(정원외)	23	(1단계) 서류종합평가 100(3배수) (2단계) 1단계 70+ 면접 30 + 신체검사/체력검정/신원조회(P/F)	▲3	
소계		33 (1.5%)				
소계			1,402 (65.7%)			
정시 (34.3%)	나군	수능(일반전형1)(의학과)	10	(일괄) 수능 95+ 면접 5		
		수능(농어촌학생전형)(의학과)	1			
		수능(국방IT우수인재2전형)	7		▼3	
	다군	수능(일반전형2)	585	(일괄) 수능 100	▲48	
		수능(일반전형3)(약학과)	15	(1단계) 수능 100(10배수) (2단계) 1단계 95+ 면접 5		
		수능(일반전형4(교차))	12	(일괄) 수능 100	▲2	
		고 른 기 회 (정 원 외)	수능(농어촌학생전형)	51	(일괄) 수능 100	-
			수능(농어촌학생전형)	3	(1단계) 수능 100(10배수) (2단계) 1단계 95+ 면접 5	
			수능(특성화고졸업자전형)	25	(일괄) 수능 100	
			수능(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전형)	20	(일괄) 수능 100	
	학생부종합(특성화고등을졸업한 재직자전형)	3	(1단계) 수능 100(10배수) (2단계) 1단계 95+ 면접 5			
	소계	732 (34.3%)				
합계			2,134			

* 의학과(12년특례): 모집인원내의 전형방법을 준용하며 1단계에서는 20명을 선발함

** 정원내 2명, 정원외 103명을 모집함

※ 재외국민전형은 총계에 포함하지 않음

※ 실기/실적(국방IT우수인재1전형), 학생부종합(특성화고등을졸업한재직자전형)은 수시 미충원시 정시에 이월하여 선발함

■ 수능최저학력기준

전형		내용
수시	학생부교과(고교추천전형)	자연계열 : 국어, 수학, 영어, 탐구(과탐 중 1과목) 중 2개 영역 등급 합 5 이내 인문계열 : 국어, 수학, 영어, 탐구(과탐, 사탐 중 1과목) 중 2개 영역 등급 합 5 이내 수학은 선택과목 제한이 없으며, 국어, 수학, 탐구, 한국사를 모두 응시한 자만 지원 가능 과탐 2과목으로 수능최저학력기준을 맞출 수 없음
	학생부종합(ACE전형)	의학과 : 국어, 수학(미적분, 기하 중 택1), 영어, 탐구(과탐 중 택2, 2과목 평균) 등급합 6이내
		약학과 : 국어, 수학(미적분, 기하 중 택1), 영어, 탐구(과탐 중 택2, 2과목 평균) 등급합 7이내
논술(논술우수자전형)	의학과 : 국어, 수학(미적분, 기하 중 택1), 영어, 탐구(과탐 중 택2, 2과목 평균) 등급합 6이내	
정시	수능(국방IT우수인재2전형)	한국사 3등급 이내

전형별, 모집단위별 모집인원

[정원내]

모집단위	수시										정시					총계
	고교 추천	ACE	SW 융합 인재	다산 인재	고른 기회 1	고른 기회 2	특성 학교 등을 졸업한 재직자	논술 우수자	체육 우수자	수시 소계	일반 전형 1	일반 전형 2	일반 전형 3	일반 전형 4 (교차)	정시 소계	
기계공학과	12	35		25	6	5		10		93		47			47	140
산업공학과	14	20		10	4	2				50		34			34	84
화학공학과		20			1	1		12		34		10			10	44
신소재공학과	5	10		5	1	1		6		28		10			10	38
응용화학생명공학과	10	30			3	2				45		25			25	70
환경안전공학과	4	10		7	2					23		14			14	37
건설시스템공학과	5	10		8	3	1				27		10			10	37
교통시스템공학과	5	10		8	3					26		11			11	37
건축학과	9	20		10	3	2		13		57		17			17	74
융합시스템공학과							1			1						1
전자공학과	27	30			12	5		47		121		92			92	213
소프트웨어학과	11	20	30		4	2		10		77		27			27	104
사이버보안학과	5	15			2					22		18			18	40
미디어학과	16	40		10	5	2				73		23			23	96
국방디지털융합학과												0				0
수학과	6	10			1			16		33		8			8	41
물리학과	5	20			2					27		7			7	34
화학과	5	16			1	1				23		14			14	37
생명과학과	5	20			2	1				28		19			19	47
의학과		20						10		30	10				10	40
간호학과	7	25			2	2				36		22		12	34	70
약학과		15								15			15		15	30
경영학과	13	20		18	5	2		16		74		36			36	110
e-비즈니스학과	9	15			1					25		19			19	44
금융공학과	5			20						25		15			15	40
글로벌경영학과							1			1						1
국어국문학과	6	10			2	1		5		24		6			6	30
영어영문학과	7	18		15	3	2				45		15			15	60
불어불문학과	5	10		5	1	1				22		5			5	27
사학과	5	10		5	1	1				22		5			5	27
문화콘텐츠학과		14			1	1				16		11			11	27
경제학과	9	10			4	2		6		31		22			22	53
행정학과	10	10			2	2				24		19			19	43
심리학과	5	10		8	2	1		8		34		9			9	43
사회학과	5	10			1	1		5		22		7			7	29
정치외교학과	5	10			1	1		5		22		8			8	30
스포츠레저학과									10	10						10
계	235	543	30	154	81	42	2	169	10	1,266	10	585	15	12	622	1,888

[정원의외]

모집단위	수시모집					정시모집					총계	
	재외국민과 외국인	종합		실기/ 실적	소계	나군		다군				소계
		특수교육 대상자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	국방IT 우수1		농어촌 학생	국방IT 우수2	농어촌 학생	특성화고 졸업자	기초생활 수급자 등		
기계공학과	7							2	2	2	6	6
산업공학과	4							2	2	1	5	5
화학공학과	2							1	1	1	3	3
신소재공학과	2							1	1	1	3	3
응용화학생명공학과	4							2	2	1	5	5
환경안전공학과	2							1	1	1	3	3
건설시스템공학과	2							2	1	1	4	4
교통시스템공학과	2							1	1	1	3	3
건축학과	4							1	2	1	4	4
융합시스템공학과			52		52							52
전자공학과	7							2	2	2	6	6
소프트웨어학과	3							2	3	1	6	6
사이버보안학과	1							1	1	1	3	3
미디어학과	4							2	3	2	7	7
국방디지털융합학과				23	23		7				7	30
수학과	2							1			1	1
물리학과	2							2			2	2
화학과	2							2			2	2
생명과학과	2							1			1	1
의학과	2					1					1	1
간호학과	1							3			3	3
약학과								3		3	6	6
경영학과	3	2			2			2	3	1	6	8
e-비즈니스학과												
금융공학과												
글로벌경영학과			51		51							51
국어국문학과	2	1			1			2			2	3
영어영문학과	3	1			1			2			2	3
불어불문학과	2	1			1			2			2	3
사학과	2	1			1			2			2	3
문화콘텐츠학과	2							2		1	3	3
경제학과	3	1			1			2			2	3
행정학과	2	1			1			2			2	3
심리학과	2	1			1			2			2	3
사회학과	2	1			1			2		1	3	4
정치외교학과	2							2		1	3	3
스포츠레저학과												
계	37	10	103	23	136	1	7	54	25	23	110	246

* 재외국민 모집단위별 최대 모집인원을 표시한 것으로 모집단위 소계에는 불포함, 입학정원 총계에만 포함.

전형요소

1. 전형반영 요소

구분	학생부 교과	학생부종합										논술 논술 우수자 전형	
	고교추천 전형	ACE 전형	SW융합 인재전형	다산인재 전형	고른기회1전형				고른 기회2 전형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 (정원외)	특성화고 등을 졸업한 재직자전형 (정원내외)*		
					국가보훈 대상자	농어촌	특성화고 졸업자	기초생활					
학교생활기록부 정량평가	○	-	-	-	-	-	-	-	-	-	-	-	○
서류 평가	학교생활기록부 정성평가	-	○	○	○	○	○	○	○	○	○	○	-
	자기소개서	-	○	○	○	○	○	○	○	○	○	○	-
면접 평가	서류기반· 인성면접	-	○	○	-	-	-	-	-	-	○	○	-
논술고사	-	-	-	-	-	-	-	-	-	-	-	-	○
수능최저학력기준	○**	-***	-	-	-	-	-	-	-	-	-	-	-***

* 정원내 2명, 정원외 103명 선발함

** 자연계열 : 국어, 수학, 영어, 탐구(과탐 중 1과목) 중 2개 영역 등급 합 5 이내

인문계열 : 국어, 수학, 영어, 탐구(과탐, 사탐 중 1과목) 중 2개 영역 등급 합 5 이내

수학은 선택과목 제한이 없으며, 국어, 수학, 영어, 탐구(2과목), 한국사 모두 필수 응시

*** 의학과(전 전형 공통): 국어, 수학(미적분, 기하 중 택1), 영어, 탐구(과탐 중 택2, 2과목 평균) 등급합 6 이내

단, 국어, 수학, 영어, 탐구(2과목), 한국사 모두 필수 응시

약학과(ACE전형): 국어, 수학(미적분, 기하 중 택1), 영어, 탐구(과탐 중 택2, 2과목 평균) 등급합 7 이내

단, 국어, 수학, 영어, 탐구(2과목), 한국사 모두 필수 응시

구분	실기/실적		수능									
			나군			다군						
	체육우수자 (축구)	국방IT 우수인재1 전형 (정원외)	일반 전형1 (의학과)	농어촌학생 전형 (정원외) (의학과)	국방IT 우수인재2 전형 (정원외)	일반 전형2	일반 전형3	일반 전형4 (교차)	농어촌학생 전형 (정원외) (의학과 제외)	특성화고 졸업자전형 (정원외)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부모 가족지원대 상자전형 (정원외)	
대학수학능력시험	-	-	○	○	○	○	○	○	○	○	○	○
학교생활기록부 정량평가	○	-	-	-	-	-	-	-	-	-	-	-
서류 평가	학교생활기록부 정성평가	-	○	-	-	-	-	-	-	-	-	-
	자기소개서	-	○	-	-	-	-	-	-	-	-	-
면접 평가	서류기반· 인성면접	○	○	○**	○**	○	○***	-	-***	-	-	-***
실기고사, 실적평가	○	-	-	-	-	-	-	-	-	-	-	-
수능최저학력기준	-	-	-	-	○****	-	-	-	-	-	-	-
기타 전형자료	-	○*	-	-	○*	-	-	-	-	-	-	-

* 국방IT우수인재1, 2전형의 2단계에서 신체검사/체력검정/신원조치를 Pass/Fail 형식으로 진행

** 나군 의학과(일반전형1, 농어촌학생전형): 인성면접 실시

*** 다군 약학과(일반전형3, 농어촌학생전형, 기초생활수급자전형): 2단계에서 인성면접 실시

****한국사 3등급 이내

2. 전형요소별 반영비율

구분		단계	전형요소					비고		
			학교생활기록부	논술고사	서류평가	면접평가	수능/기타			
학생부 교과	학생부교과(고교추천전형)	일괄	교과100	-	-	-	-	-		
학생부 종합	학생부종합(ACE전형)	1단계	-	-	100	-	-	1단계 3배수		
		2단계	-	-	70	30	-			
	학생부종합(SW융합인재전형)	1단계	-	-	100	-	-	1단계 3배수		
		2단계	-	-	70	30	-			
	학생부종합(다산인재전형)		일괄	-	-	100	-	-		
	고 른 기 회	학생부종합(고른기회1전형)		일괄	-	-	100	-	-	
		학생부종합(고른기회2전형)		일괄	-	-	100	-	-	
		학생부종합(특수교육대상자전형) (정원외)	1단계	-	-	100	-	-	1단계 3배수	
			2단계	-	-	70	30	-		
		학생부종합(특성화고등을졸업한재 직자전형)(정원내/외)	1단계	-	-	100	-	-	1단계 3배수	
2단계			-	-	70	30	-			
논술	논술(논술우수자전형)	일괄	교과 20	80	-	-	-	-		
실기/ 실적	실기/실적(체육우수자(축구)전형)		일괄	학생부5 (교과 4 ,출결 1)	-	-	25	실기 30 실적 40	모집단위: 스포츠레저학과	
	실기/실적(국방IT우수인재1전형) (정원외)	1단계	-	-	100	-	-	국방디지털융합학과 1단계 3배수		
		2단계	-	-	70	30	-			
수능	나 군	수능(일반전형1)(의학과)		일괄	-	-	인성면접 5	수능 95	모집단위: 의학과	
		수능(농어촌학생전형)(의학과) (정원외)								
		수능(국방IT우수인재2전형) (정원외)	1단계	-	-	-	-	수능 100	국방디지털융합학과 1단계 5배수	
	2단계		-	-	-	20	수능 80			
	다 군	수능(일반전형2)		일괄	-	-	-	-	수능 100	-
		수능(일반전형3)(약학과)	1단계	-	-	-	-	수능 100	모집단위: 약학과 1단계 10배수	
			2단계	-	-	-	인성면접 5	수능 95		
		수능(일반전형4)(교차)		일괄	-	-	-	-	수능 100	모집단위: 간호학과(인문)
		수능(농어촌학생전형) (정원외)	일괄	-	-	-	-	-	수능 100	의학과/약학과 제외
			1단계	-	-	-	-	수능 100	모집단위: 약학과 1단계 10배수	
			2단계	-	-	-	인성면접 5	수능 95		
			수능(특성화고졸업자전형) (정원외)		일괄	-	-	-	-	수능 100
	수능(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전형) (정원외)	일괄	-	-	-	-	-	수능 100	약학과 제외	
		1단계	-	-	-	-	수능 100	모집단위: 약학과 1단계 10배수		
2단계		-	-	-	인성면접 5	수능 95				

※ 실기/실적(국방IT우수인재1전형), 학생부종합(특성화고등을졸업한재직자전형)은 수시 미충원시 정시에 이월하여 선발

※ 국방IT우수인재1, 2전형의 2단계에서 신체검사/체력검정/신원조회를 Pass/Fail 형식으로 진행

학생부반영방법

1. 대상 전형: 학생부교과(고교추천전형), 논술(논술우수자전형), 실기/실적(체육우수자(축구)전형)

2. 반영교과 및 반영비율

- 계열 구분 없이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학 교과(편제) 반영
- 학년별 가중치 없음
- 과목별 가중치 없음
- ※ 교과(편제)명에 따라 반영을 원칙으로 하며 유사 과목의 경우에는 별도 심의를 통해 반영할 수 있음

3. 인정범위 및 반영비율: 전형별 학생부 반영비율의 100%(기본점수 없음)

대 상	인정범위	반영 과목
졸업(예정)자	1학년 1학기 ~ 3학년 1학기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조기졸업자*	1학년 1학기 ~ 2학년 1학기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조기졸업자는 학생부교과(고교추천전형) 지원 불가

4. 반영방법

<교과 반영방법>

- 가. 활용지표: 석차등급
- 나. 총점 환산 방법

$$\text{총점(100점 만점)} = \frac{\sum(\text{교과별 평균등급점수})}{\text{반영 교과 수}}$$

다. 평균 등급점수 산출방법

1) 교과별 평균등급 산출

$$\text{교과별 평균등급점수} = \frac{\sum(\text{과목별 이수단위} \times \text{등급점수})}{\sum(\text{과목별 이수단위})}$$

2) 등급점수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등급점수	100	99	98	95	90	85	75	65	0

라. 등급이 없는 과목은 반영하지 않음

<비교과 반영방법>

- 가. 활용지표: 미인정(무단)결석일수
- 나. 총점(1점)

미인정(무단)결석일수	0~5일	6~10일	11~15일	16~20일	21일 이상
점수	1	0.8	0.6	0.4	0.0

* 체육우수자(축구)전형만 해당

5. 비교내신: 검정고시 합격자, 외국 고등학교 출신자, 2021년 2월 이전 졸업자, 학생부 성적이 없거나 학생부 등급산출이 불가능한 자 등은 논술고사/실적점수 등을 활용하여 산출

*단, 학생부교과(고교추천전형)는 비교내신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논술 반영 방법

1. 논술 유형, 출제경향

계열	출제경향
자연계열 [수리논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리적 분석력, 응용력, 창의력을 측정하는 문제 출제 - 고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학생의 경우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다양한 수학적 주제를 다룸 - 답이 틀려도 풀이과정이 옳으면 부분점수를 부여함 - 공식을 암기하여 풀 수 있는 문제는 출제하지 않음 - 영어 제시문은 출제하지 않음
의학과 [수리논술 + 과학논술(생명과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리논술: 수리적 분석력, 응용력, 창의력을 측정하는 문제 출제 - 과학논술: 자연과학적 분석력, 응용력, 창의력을 측정하는 문제 출제 - 답이 틀려도 풀이과정이 옳으면 부분점수를 부여함 - 공식을 암기하여 풀 수 있는 문제는 출제하지 않음 - 영어 제시문은 출제하지 않음
인문계열 [통합논술(언어·사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교 교육과정을 정상적으로 이수한 수험생이라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의 문제 출제 - 요약형 혹은 비교·대조형 문제와 통합형 문제 출제 - 요약형 문제의 경우 수험생 본인의 의견을 더하지 않고 제시문에서 소주제문들을 간추려 한 편의 글이 되도록 요약하는 능력을 측정 - 비교·대조형 문제의 경우 제시문들의 주제나 논점을 중심으로 그 유사점·차이점을 한 편의 글이 되도록 기술하는 능력을 측정 - 통합형 문제의 경우 3~5개의 독립된 제시문들을 주고 그 지문들을 서로 연결하는 논리력과 통합적 사고력을 측정(제시문들은 인문/사회분야를 비롯한 범교과 과정에서 골고루 취함) - 영어 제시문은 출제하지 않음

2. 시험시간: 120분

수능 반영 방법

1. 수능 반영영역 및 반영비율

계열구분	모집단위	국어	수학	영어	탐구	한국사	비고
자연1	공과대학, 정보통신대학, 자연과학대학, 간호학과(일반전형2), 약학과(일반전형3) (의학과, 국방디지털융합학과 제외)	20% (200점)	35% (350점)	15% (150점)	30% (300점)	총점에서 등급별로 감점	*수학: 미적분, 기하 중 택1 *탐구: 과탐 중 택2
자연2	의학과, 국방디지털융합학과	20% (200점)	40% (400점)	10% (100점)	30% (300점)		
인문1	경영대학, 간호학과(일반전형4)	25% (250점)	40% (400점)	15% (150점)	20% (200점)		
인문2	인문대학, 사회과학대학	35% (350점)	25% (250점)	15% (150점)	25% (250점)		*수학: 선택과목 제한 없음 *탐구: 사탐, 과탐 중 택2

※ 계열은 본교 기준 계열을 의미하며, 지정된 선택과목 미응시자는 불합격처리 함. (예비순위를 부여하지 않음)

※ 특성화고졸업자전형(정원외)은 직탐(2과목) 또는 계열별/모집단위 지정 탐구영역(2과목)을 반영함.

2. 수능 성적 활용지표

가. 수능성적 반영방법

국어·수학	영어	탐구	한국사
표준점수	자체 변환점수	자체 변환점수 (두 과목의 변환점수합산)	감점방식

나. 수능총점 계산식: 만점(1,000점)으로 산정하고 한국사는 총점에서 감점하는 방식 운영

$$1) \text{영역별 점수(국어,수학)} = \frac{\text{표준점수}}{\text{표준점수의 만점}} \times \text{반영비율} \times 1,000$$

$$2) \text{탐구점수} = \frac{\text{2과목의 변환점수의 합}}{\text{2과목의 변환점수 만점의 합}} \times \text{반영비율} \times 1,000$$

※ 변환점수표는 2023학년도 수능성적 발표 후 아주대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공지 예정

※ 응시한 영역에 탐구점수를 활용하여 반영

3) 한국사: 총점에서 일정점수를 감점하는 방식으로 진행

다. 영어 과목 변환점수: 아래 표의 환산방식에 따름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변환점수(10%)	100	96	92	84	60	40	20	10	0
변환점수(15%)	150	144	138	126	90	60	30	15	0

라. 한국사 과목 반영점수표: 한국사 수능 등급별 일정 점수를 수능총점에 반영(감점 방식)

구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반영 점수	감점없음				-5	-10	-20	-30	-40

지원자격

구분				학생부 교과	학생부종합								논술		
				고교추천 전형	ACE 전형	SW융합 인재 전형	다산 인재 전형	고른기회1전형				고른 기회2 전형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 (정원외)	특성화고 등을졸업 한재직자 전형* (정원내외)	논술 우수자 전형
								국가 보훈대 상자	농어촌	특성화 고졸업 자	기초 생활				
고 학 졸 업 (예 정) 자	학 교 유 형	국 내 고	일반고	○				○						***	
			자율고											-	
			과학고											-	
			외고											-	
			국제고											-	
			예술고											-	
			체육고											-	
	특목고	-													
	졸 업 연 도		2023. 01.~	○	○	○	○	○	○	○	○	○	○	○	
			2021. 01.~2022. 01.	○	○	○	○	○	○	○	○	○	○	○	
2021. 01.이전			-	-	-	-	-	-	-	-	-	-	-	-	
검정고시 합격자				-	-	-	-	-	-	-	-	-	-		

구분				실기/실적		수능								
				체육 우수자 (축구) 전형	국방IT 우수인재 1전형 (정원외)	일반전형1(의학과), 일반전형2, 일반전형3, 일반전형4(교차)	국방IT 우수인재2 전형 (정원외)	농어촌 학생전형 (정원외)	특성화고 졸업자전형 (정원외)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 전형 (정원외)				
고 학 졸 업 (예 정) 자	학 교 유 형	국 내 고	일반고	○		○			○					
			자율고											-
			과학고											-
			외고											-
			국제고											-
			예술고											-
			체육고											-
	특목고	-												
	졸 업 연 도		2023. 01.~	○	○	○	○	○	○	○	○	○	○	
			2021. 01.~2022. 02.	○	○	○	○	○	○	○	○	○	○	
2021. 01.이전			-	-	-	-	-	-	-	-	-	-		
검정고시 합격자				○ (20. 1. 이후)	-	-	-	-	-	-	-			

* : 정원내 2명, 정원외 103명 모집함

** : 일반고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관련 증빙을 할 수 있는 자는 지원 가능함

*** : 임관일 기준 만 20세 이상 27세 이하인 자(1999. 6. 2. ~ 2007. 6. 1. 사이 출생자)

1. 학생부교과(수시)

전형	지원 자격
학생부교과 (고교추천전형)	<p>2021년 1월 이후 국내 고교 졸업(예정)자로서 3학년 1학기까지 전 학기를 모두 이수한 자 (조기졸업자 및 교과 등급을 환산할 수 없는 경우는 지원불가) 중 고교추천을 받은 자(인원제한 없음)</p> <p>※ 국내 일반고, 자율고, 특목고만 지원 가능하며 아래 해당자는 지원 불가</p> <p>① 특성화고, 종합 및 일반고 전문(실업)반 졸업(예정)자</p> <p>② 특목고 중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졸업(예정)자</p> <p>③ 일반고 재학 중 직업교육과정 이수자</p> <p>④ 방송통신고, 대안학교(각종학교), 고등학교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출신자 및 일반 고등학교의 대안교육 위탁 학생</p> <p>⑤ 검정고시 합격자, 외국고등학교 출신자 등 학교생활기록부가 없거나 학교생활기록부 반영교과 점수를 산출할 수 없는 자</p>

2. 학생부종합(수시)

전형	지원 자격														
학생부종합 (ACE전형)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조기졸업자 포함]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학생부종합 (SW융합인재전형)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조기졸업자 포함]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고교교육과정의 수학 및 과학을 바탕으로 SW분야의 역량과 잠재력을 갖춘 자														
학생부종합 (다산인재전형)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조기졸업자 포함]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본교의 인재상인 다산(茶山)형 인재의 핵심역량에 강점이 있는 자														
학생부종합 (고른기회1전형)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조기졸업자 포함]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각 항목에서 규정한 세부 지원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table border="1"> <thead> <tr> <th>지원자격</th> <th>지원자격별 세부 자격기준</th> </tr> </thead> <tbody> <tr> <td>국가보훈 대상자</td> <td>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보훈(지)청장이 발급하는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증명서’ 제출 가능자</td> </tr> <tr> <td rowspan="2">농어촌 또는 도서·벽지 출신자</td> <td> <p><가>또는 <나>의 조건에 해당하고 제출서류에 결함이 없는 자</p> <p>※ 국내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만 지원 가능함</p> <table border="1"> <thead> <tr> <th>유형</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가 6년과정 이수자 (부·모·지원자)</td> <td>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6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기간 동안 본인, 부, 모가 모두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하고 출신 고등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자</td> </tr> <tr> <td>나 12년과정 이수자 (지원자)</td> <td>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 12년 전 교육과정(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을 이수한 자 중 자격 해당 기간 동안 본인이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고 출신 고등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자</td> </tr> </tbody> </table> </td> </tr> <tr> <td colspan="2"> <p>※ 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 모두가 읍·면 또는 도서·벽지 소재학교 이어야 함</p> <p>※ 6년 과정 이수자의 경우 중·고등학교 재학 중 행정구역 개편으로 시(구·동) 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은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로 간주함[단, 행정구역 개편 후 부·모·본인 중 1명이라도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간 중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가 아닌 지역으로 1일이라도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p> <p>※ 부모와 학생의 거주지 또는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가 동일한 읍·면 또는 도서·벽지가 아니라도 가능함</p> <p>※ 12년 과정 이수자의 경우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 행정구역 개편으로 시(구·동) 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은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로 간주함[단, 행정구역 개편 후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간 중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가 아닌 지역으로 1일이라도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p> </td> </tr> </tbody> </table>	지원자격	지원자격별 세부 자격기준	국가보훈 대상자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보훈(지)청장이 발급하는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증명서’ 제출 가능자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 출신자	<p><가>또는 <나>의 조건에 해당하고 제출서류에 결함이 없는 자</p> <p>※ 국내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만 지원 가능함</p> <table border="1"> <thead> <tr> <th>유형</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가 6년과정 이수자 (부·모·지원자)</td> <td>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6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기간 동안 본인, 부, 모가 모두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하고 출신 고등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자</td> </tr> <tr> <td>나 12년과정 이수자 (지원자)</td> <td>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 12년 전 교육과정(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을 이수한 자 중 자격 해당 기간 동안 본인이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고 출신 고등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자</td> </tr> </tbody> </table>	유형	내용	가 6년과정 이수자 (부·모·지원자)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6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 하는 기간 동안 본인, 부, 모가 모두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하고 출신 고등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자	나 12년과정 이수자 (지원자)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 12년 전 교육과정(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을 이수 한 자 중 자격 해당 기간 동안 본인이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고 출신 고등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자	<p>※ 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 모두가 읍·면 또는 도서·벽지 소재학교 이어야 함</p> <p>※ 6년 과정 이수자의 경우 중·고등학교 재학 중 행정구역 개편으로 시(구·동) 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은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로 간주함[단, 행정구역 개편 후 부·모·본인 중 1명이라도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간 중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가 아닌 지역으로 1일이라도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p> <p>※ 부모와 학생의 거주지 또는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가 동일한 읍·면 또는 도서·벽지가 아니라도 가능함</p> <p>※ 12년 과정 이수자의 경우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 행정구역 개편으로 시(구·동) 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은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로 간주함[단, 행정구역 개편 후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간 중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가 아닌 지역으로 1일이라도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p>	
	지원자격	지원자격별 세부 자격기준													
국가보훈 대상자	국가보훈기본법 제3조 제2호의 ‘국가보훈대상자’로서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 보훈(지)청장이 발급하는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증명서’ 제출 가능자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 출신자	<p><가>또는 <나>의 조건에 해당하고 제출서류에 결함이 없는 자</p> <p>※ 국내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만 지원 가능함</p> <table border="1"> <thead> <tr> <th>유형</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가 6년과정 이수자 (부·모·지원자)</td> <td>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6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기간 동안 본인, 부, 모가 모두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하고 출신 고등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자</td> </tr> <tr> <td>나 12년과정 이수자 (지원자)</td> <td>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 12년 전 교육과정(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을 이수한 자 중 자격 해당 기간 동안 본인이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고 출신 고등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자</td> </tr> </tbody> </table>	유형	내용	가 6년과정 이수자 (부·모·지원자)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6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 하는 기간 동안 본인, 부, 모가 모두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하고 출신 고등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자	나 12년과정 이수자 (지원자)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 12년 전 교육과정(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을 이수 한 자 중 자격 해당 기간 동안 본인이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고 출신 고등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자								
	유형	내용													
가 6년과정 이수자 (부·모·지원자)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6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 하는 기간 동안 본인, 부, 모가 모두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하고 출신 고등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자														
나 12년과정 이수자 (지원자)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 12년 전 교육과정(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을 이수 한 자 중 자격 해당 기간 동안 본인이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고 출신 고등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자														
<p>※ 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 모두가 읍·면 또는 도서·벽지 소재학교 이어야 함</p> <p>※ 6년 과정 이수자의 경우 중·고등학교 재학 중 행정구역 개편으로 시(구·동) 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은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로 간주함[단, 행정구역 개편 후 부·모·본인 중 1명이라도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간 중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가 아닌 지역으로 1일이라도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p> <p>※ 부모와 학생의 거주지 또는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가 동일한 읍·면 또는 도서·벽지가 아니라도 가능함</p> <p>※ 12년 과정 이수자의 경우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 행정구역 개편으로 시(구·동) 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은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로 간주함[단, 행정구역 개편 후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간 중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가 아닌 지역으로 1일이라도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p>															

전형	지원 자격																				
	지원자격 지원자격별 세부 자격기준	<p>※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90조의 특수목적고, 대안학교(인가,비인가), 국외고, 검정고시,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p> <p>※ 고교 졸업예정자가 최종 합격할 경우 재학 고등학교의 졸업일까지 지원자격(농어촌 지역 거주 및 농어촌 지역 고교 재학)을 유지해야 하며, 자격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p> <p>※ 지원자격은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함</p> <hr/> <p>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교(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제외)에 입학하여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가> 또는 <나>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p> <table border="1" data-bbox="411 510 1412 676"> <thead> <tr> <th colspan="2">유형</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가</td> <td>동일계열의 고교 기준학과 출신자</td> <td>우리대학의 모집단위별로 지정한 동일계열의 고교 기준학과 출신자</td> </tr> <tr> <td>나</td> <td>전문교과 30단위 이상 이수자</td> <td>모집단위별로 지정한 동일계열의 전문교과 30단위 이상 이수자</td> </tr> </tbody> </table> <p>※ 일반계고등학교 중 종합고등학교 전문계학과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는 지원 가능함</p> <p>※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라 마이스터고등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졸업(예정)자는 특성화고교졸업자를 선발하는 전형에 지원할 수 없음</p> <p>※ 특성화고교 출신자는 학생부종합전형(고른기회1전형)의 모집단위 중 공과대학, 정보통신대학, 경영학과만 지원할 수 있음</p> <hr/> <p>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조기졸업자 포함]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가> 또는 <나>의 조건에 해당하고 제출서류에 결함이 없는 자</p> <table border="1" data-bbox="411 1016 1412 1124"> <thead> <tr> <th colspan="2">유형</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가</td> <td>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수급권자), 제2호(수급자)와 제10호에 따른 대상자</td> <td></td> </tr> <tr> <td>나</td> <td>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대상자</td> <td></td> </tr> </tbody> </table> <p>※ 학생이 속한 세대의 구성원 중 한명이 차상위 계층 대상자인 경우(본인 기준 자격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차상위 가구의 학생) 주민등록등본 상 지원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하며 자격에 따른 증명서 외 주민등록등본 1부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 또는 모 기준)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함</p> <p>※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 관련 법령개정시, 지원 자격 인정범위는 변경될 수 있음</p>	유형		내용	가	동일계열의 고교 기준학과 출신자	우리대학의 모집단위별로 지정한 동일계열의 고교 기준학과 출신자	나	전문교과 30단위 이상 이수자	모집단위별로 지정한 동일계열의 전문교과 30단위 이상 이수자	유형		내용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수급권자), 제2호(수급자)와 제10호에 따른 대상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대상자		
유형		내용																			
가	동일계열의 고교 기준학과 출신자	우리대학의 모집단위별로 지정한 동일계열의 고교 기준학과 출신자																			
나	전문교과 30단위 이상 이수자	모집단위별로 지정한 동일계열의 전문교과 30단위 이상 이수자																			
유형		내용																			
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수급권자), 제2호(수급자)와 제10호에 따른 대상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대상자																				
학생부종합 (고른기회2전형)	지원자격 지원자격별 세부 자격기준	<p>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조기졸업자 포함]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각 항목에서 규정한 세부 지원 자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p> <table border="1" data-bbox="290 1420 1428 2033"> <thead> <tr> <th colspan="2">지원자격</th> <th>지원자격별 세부 자격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rowspan="2">사회 기여자</td> <td><가>~<바>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제출서류에 결함이 없는 자</td> <td><가>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의 민주화운동 관련자증서를 교부받은 자)의 자녀</td> </tr> <tr> <td><나>군부사관 또는 직업군인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자의 자녀</td> <td><다>경찰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자의 자녀</td> </tr> <tr> <td rowspan="2">사회 배려자</td> <td><가>~<다>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제출서류에 결함이 없는 자</td> <td><가>아동복지시설출신자: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자</td> </tr> <tr> <td><나>장애우 부모 자녀: 부모 중 1인 이상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중증장애인 등록이 되어있는 자의 자녀</td> <td><라>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자의 자녀</td> </tr> <tr> <td></td> <td><마>교정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자의 자녀</td> <td><바>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및 등급별 구분표 지역 구분 중 가~다 지역에 소재하는 근무지에서 2012년 1월 1일 이후부터 2022년 9월 1일까지 기간 중 통산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이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재직 중인 자의 자녀</td> </tr> <tr> <td></td> <td></td> <td>※ 근무자의 직종은 행정공무원·교육공무원·군인·경찰·소방공무원·교정직 공무원만 해당함</td> </tr> </tbody> </table>	지원자격		지원자격별 세부 자격기준	사회 기여자	<가>~<바>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제출서류에 결함이 없는 자	<가>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의 민주화운동 관련자증서를 교부받은 자)의 자녀	<나>군부사관 또는 직업군인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자의 자녀	<다>경찰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자의 자녀	사회 배려자	<가>~<다>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제출서류에 결함이 없는 자	<가>아동복지시설출신자: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자	<나>장애우 부모 자녀: 부모 중 1인 이상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중증장애인 등록이 되어있는 자의 자녀	<라>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자의 자녀		<마>교정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자의 자녀	<바>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및 등급별 구분표 지역 구분 중 가~다 지역에 소재하는 근무지에서 2012년 1월 1일 이후부터 2022년 9월 1일까지 기간 중 통산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이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재직 중인 자의 자녀			※ 근무자의 직종은 행정공무원·교육공무원·군인·경찰·소방공무원·교정직 공무원만 해당함
지원자격		지원자격별 세부 자격기준																			
사회 기여자	<가>~<바>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제출서류에 결함이 없는 자	<가>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심의위원회의 민주화운동 관련자증서를 교부받은 자)의 자녀																			
	<나>군부사관 또는 직업군인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자의 자녀	<다>경찰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자의 자녀																			
사회 배려자	<가>~<다>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제출서류에 결함이 없는 자	<가>아동복지시설출신자: 아동복지법 제3조 제10호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에서 보호받는 자																			
	<나>장애우 부모 자녀: 부모 중 1인 이상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중증장애인 등록이 되어있는 자의 자녀	<라>소방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자의 자녀																			
	<마>교정직공무원으로 15년 이상 근무한 자의 자녀	<바>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 및 등급별 구분표 지역 구분 중 가~다 지역에 소재하는 근무지에서 2012년 1월 1일 이후부터 2022년 9월 1일까지 기간 중 통산 근무경력이 5년 이상이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재직 중인 자의 자녀																			
		※ 근무자의 직종은 행정공무원·교육공무원·군인·경찰·소방공무원·교정직 공무원만 해당함																			

전형	지원 자격							
	지원자격	지원자격별 세부 자격기준 <다>다문화 가정의 자녀: 결혼 이전에 외국 국적이었던 친모(친부)와 국적이 대한민국인 친부(친모) 사이에 출생한 다문화가정의 자녀로서 대한민국 국적자 ----- 다자녀 가구 다자녀(3자녀 이상) 가구의 자녀						
학생부종합 (특성화고등을졸업한 재직자전형) (정원내,외)	<p>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 (2023년 3월 1일 기준)(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p> <p>가.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자</p> <p>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고등학교(마이스터고) 졸업자</p> <p>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도 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자</p> <p>라.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p> <p style="text-align: center;"><산업체 재직기간, 인정범위 유의사항></p> <table border="1" data-bbox="288 696 1447 1294"> <thead> <tr> <th data-bbox="288 696 400 734">구분</th> <th data-bbox="400 696 1447 734">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288 734 400 1171"> 재직기간 </td> <td data-bbox="400 734 1447 1171"> 1) 2023년 3월 1일 기준으로 재직기간 3년 이상 근무해야 함 ※ 재직기간 3년은 1,095일 기준으로 산정(3년×365일=1,095일) 가)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상의 가입기간만을 재직기간으로 산정하며, 재직할 모든 산업체의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반영함 나) 2개 이상의 산업체에서 재직할 경우 총 재직기간은 합산하여 산정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이중으로 합산하지 않음 다) 현 직장 재직증명서상의 재직기간과 4대 보험 가입 확인서상의 가입기간이 다를 경우 재직증명서상의 재직기간 범위 내에 있는 4대 보험 가입 확인서상의 가입 기간만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함 2) 2개 이상 산업체에서 재직할 경우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3년 이상이 되어야 함 3) 재직기간은 고등학교 졸업일 다음 날부터 근무한 것으로 산정함 4) 원서접수 시작일 현재 휴직(휴업)자는 지원할 수 없음(원서접수일은 모집요강공지) 5) 병역특례 기간의 산업체 경력을 포함하여 군 의무복무 경력은 재직기간 산정에 포함됨 </td> </tr> <tr> <td data-bbox="288 1171 400 1294"> 산업체 인정범위 </td> <td data-bbox="400 1171 1447 1294">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소속 직원의 경우) 2)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사업체(창업·자영업자 포함) ※ 단, 4대 보험 개인(지역)가입자는 지원자격에 해당하지 않음 </td> </tr> </tbody> </table>		구분	내용	재직기간	1) 2023년 3월 1일 기준으로 재직기간 3년 이상 근무해야 함 ※ 재직기간 3년은 1,095일 기준으로 산정(3년×365일=1,095일) 가)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상의 가입기간만을 재직기간으로 산정하며, 재직할 모든 산업체의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반영함 나) 2개 이상의 산업체에서 재직할 경우 총 재직기간은 합산하여 산정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이중으로 합산하지 않음 다) 현 직장 재직증명서상의 재직기간과 4대 보험 가입 확인서상의 가입기간이 다를 경우 재직증명서상의 재직기간 범위 내에 있는 4대 보험 가입 확인서상의 가입 기간만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함 2) 2개 이상 산업체에서 재직할 경우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3년 이상이 되어야 함 3) 재직기간은 고등학교 졸업일 다음 날부터 근무한 것으로 산정함 4) 원서접수 시작일 현재 휴직(휴업)자는 지원할 수 없음(원서접수일은 모집요강공지) 5) 병역특례 기간의 산업체 경력을 포함하여 군 의무복무 경력은 재직기간 산정에 포함됨	산업체 인정범위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소속 직원의 경우) 2)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사업체(창업·자영업자 포함) ※ 단, 4대 보험 개인(지역)가입자는 지원자격에 해당하지 않음
구분	내용							
재직기간	1) 2023년 3월 1일 기준으로 재직기간 3년 이상 근무해야 함 ※ 재직기간 3년은 1,095일 기준으로 산정(3년×365일=1,095일) 가)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상의 가입기간만을 재직기간으로 산정하며, 재직할 모든 산업체의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반영함 나) 2개 이상의 산업체에서 재직할 경우 총 재직기간은 합산하여 산정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이중으로 합산하지 않음 다) 현 직장 재직증명서상의 재직기간과 4대 보험 가입 확인서상의 가입기간이 다를 경우 재직증명서상의 재직기간 범위 내에 있는 4대 보험 가입 확인서상의 가입 기간만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함 2) 2개 이상 산업체에서 재직할 경우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3년 이상이 되어야 함 3) 재직기간은 고등학교 졸업일 다음 날부터 근무한 것으로 산정함 4) 원서접수 시작일 현재 휴직(휴업)자는 지원할 수 없음(원서접수일은 모집요강공지) 5) 병역특례 기간의 산업체 경력을 포함하여 군 의무복무 경력은 재직기간 산정에 포함됨							
산업체 인정범위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소속 직원의 경우) 2)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사업체(창업·자영업자 포함) ※ 단, 4대 보험 개인(지역)가입자는 지원자격에 해당하지 않음							
학생부종합 (특수교육대상자전형) (정원외)	<p>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조기졸업자 포함]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아래의 기준 중 하나를 만족하는 자</p> <p>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하여 장애인 등록이 되어있는 자</p> <p>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등급자(국가보훈처 등록)</p>							

3. 논술 및 실기/실적(수시)

전형	지원 자격	
논술 (논술우수자전형)	<p>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조기졸업자 포함]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p>	
실기/실적 (체육우수자전형(축구))	<p>국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조기졸업자 포함]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단, 2020년 1월 이후 학력 인정자) 중 아래 기준 중 하나를 충족하는 자</p> <p>1) 2020년 ~ 2022년 청소년대표 ※ 단, 국내·외 대회에 선발 및 참가한 실적이 있어야 함(단순 소집 제외)</p> <p>2) 2020년 ~ 2022년 전국대회 4강 이내 입상자</p> <p>3) 2020년 ~ 2022년 고등리그 왕중왕전, K리그 U18 챔피언십 대회에 출전한 실적이 있는 자 ※ 단, 위 2), 3)번 조건의 해당 기간 중 경기실적평가에 반영되는 대회(또는 리그) 가운데 최소한 1개의 대회(또는 리그)에서 1학년 때는 소속팀 출전경기 시간의 30% 이상, 2학년 때는 40% 이상, 3학년 때는 50% 이상 출전해야 함</p> <p>※ 포지션별 인원: FW(5명이내), MF(5명 이내), DF(5명이내), GK(2명이내) 선발 (단, 포지션별 적격자가 없을 경우 미선발할 수 있음)</p>	

전형	지원 자격				
실기/실적 (국방IT우수인재1 전형) (정원외)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조기졸업자 포함]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가. 군 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등) 2항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로서 임관일 기준 만 20세 이상 27세 이하인 자 *2023학년도 입학자의 임관기준일: 2027. 6. 1.(1999. 6. 2. ~ 2007. 6. 1. 사이 출생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군 인사법 제10조 (결격사유) 2항 </td> <td>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td> </tr> </tbody> </table>	구분	내용	군 인사법 제10조 (결격사유) 2항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구분	내용			
군 인사법 제10조 (결격사유) 2항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나.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인 자(이중국적자는 지원할 수 없음) 다. 친권자 동의 및 본인이 재정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자 ※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본인이 재정보증보험에 가입 제한 시 지원불가					

4. 수능(정시)

※ 해당 전형 모집단위별 수능 반영영역의 성적이 없거나 지정한 유형과 다르게 응시한 경우 불합격처리 함(예비순위 부여하지 않음)

전형	지원 자격				
수능(일반전형 1,2,3,4(교차))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로서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조기졸업자 포함]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수능 (국방IT우수인재2 전형) (정원외)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로서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조기졸업자 포함]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 가. 군 인사법 제10조(결격사유 등) 2항에 저촉되지 아니한 자로서 임관일 기준 만 20세 이상 27세 이하인 자 *2023학년도 입학자의 임관기준일: 2027. 6. 1.(1999. 6. 2. ~ 2007. 6. 1. 사이 출생자)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head> <tr> <th style="text-align: center;">구분</th> <th style="text-align: center;">내용</th> </tr> </thead> <tbody> <tr> <td style="text-align: center; vertical-align: middle;"> 군 인사법 제10조 (결격사유) 2항 </td> <td>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td> </tr> </tbody> </table>	구분	내용	군 인사법 제10조 (결격사유) 2항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구분	내용			
군 인사법 제10조 (결격사유) 2항	1.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사람 2.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3.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또는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전형	지원 자격									
	<p>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과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과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p> <p>나.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인 자(이중국적자는 지원할 수 없음) 다. 친권자 동의 및 본인이 재정보증보험에 가입 가능한 자 ※ 신용불량 등의 사유로 본인이 재정보증보험에 가입 제한 시 지원불가</p>									
수능(농어촌학생전형) (정원외)	<p>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로서 국내 고교 졸업(예정)자[조기졸업자 포함]로서 <가>또는 <나>의 조건에 해당하고 제출서류에 결함이 없는 자 ※ 국내 일반고, 자율고, 특성화고만 지원 가능함</p> <table border="1" data-bbox="304 680 1442 1064"> <thead> <tr> <th colspan="2">유형</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가</td> <td>6년과정 이수자 (부·모·지원자)</td> <td>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6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는 기간 동안 본인, 부, 모 모두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하고 출신 고등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자</td> </tr> <tr> <td>나</td> <td>12년과정 이수자 (지원자)</td> <td>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 12년 전 교육과정(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을 이수한 자 중 자격 해당 기간 동안 본인이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고 출신 고등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자</td> </tr> </tbody> </table> <p>※ 2개 이상의 학교에 재학한 경우에는 해당 학교 모두가 읍·면 또는 도서·벽지 소재 학교이어야 함 ※ 6년 과정 이수자는 중·고등학교 재학 중 행정구역 개편으로 시(구·동) 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은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로 간주함[단, 행정구역 개편 후 부·모·본인 중 1명이라도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간 중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가 아닌 지역으로 1일이라도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부모와 학생의 거주지 또는 거주지와 학교 소재지가 동일한 읍·면 또는 도서·벽지가 아니라도 가능함 ※ 12년 과정 이수자는 초·중·고등학교 재학 중 행정구역 개편으로 시(구·동) 지역으로 편입된 지역은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로 간주함[단, 행정구역 개편 후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기간 중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가 아닌 지역으로 1일이라도 거주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90조의 특수목적고, 대안학교(인가,비인가), 국외고, 검정고시, 학력인정 평생교육 시설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 고교 졸업예정자가 최종 합격할 경우 재학 고등학교의 졸업일까지 지원자격(농어촌 지역 거주 및 농어촌 지역 고교 재학)을 유지해야 하며, 자격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지원자격은 연속된 연수만을 인정함</p>	유형		내용	가	6년과정 이수자 (부·모·지원자)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6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 하는 기간 동안 본인, 부, 모 모두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하고 출신 고등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자	나	12년과정 이수자 (지원자)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 12년 전 교육과정(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을 이수한 자 중 자격 해당 기간 동안 본인 이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고 출신 고등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자
유형		내용								
가	6년과정 이수자 (부·모·지원자)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학교에서 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6년 전 교육과정을 이수 하는 기간 동안 본인, 부, 모 모두 농어촌 지역에서 거주하고 출신 고등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자								
나	12년과정 이수자 (지원자)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에 소재하는 학교에서 초·중·고등학교 12년 전 교육과정(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을 이수한 자 중 자격 해당 기간 동안 본인 이 읍·면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고 출신 고등학교장의 확인을 받은 자								
수능(특성화고졸업자전형) (정원외)	<p>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로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1조 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교(중 자연현장 실습 등 체험 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 제외)에 입학하여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가> 또는 <나>의 조건에 해당하는 자</p> <table border="1" data-bbox="304 1615 1442 1798"> <thead> <tr> <th colspan="2">유형</th> <th>내용</th> </tr> </thead> <tbody> <tr> <td>가</td> <td>동일계열의 고교 기준학과 출신자</td> <td>우리대학의 모집단위별로 지정한 동일계열의 고교 기준학과의 교과과정을 이수한 자</td> </tr> <tr> <td>나</td> <td>전문교과 30단위 이상 이수자</td> <td>모집단위별로 지정한 동일계열의 전문교과 30단위 이상 이수자</td> </tr> </tbody> </table> <p>※ 일반계고등학교 중 종합고등학교의 전문계학과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졸업(예정)자는 지원 가능함 ※ 대학입학전형 기본사항에 따라 마이스터고등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학력인정평생교육시설 졸업(예정)자는 특성화고교졸업자를 선발하는 전형에 지원할 수 없음</p>	유형		내용	가	동일계열의 고교 기준학과 출신자	우리대학의 모집단위별로 지정한 동일계열의 고교 기준학과의 교과과정을 이수한 자	나	전문교과 30단위 이상 이수자	모집단위별로 지정한 동일계열의 전문교과 30단위 이상 이수자
유형		내용								
가	동일계열의 고교 기준학과 출신자	우리대학의 모집단위별로 지정한 동일계열의 고교 기준학과의 교과과정을 이수한 자								
나	전문교과 30단위 이상 이수자	모집단위별로 지정한 동일계열의 전문교과 30단위 이상 이수자								
수능(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전형)	<p>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로서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조기졸업자 포함] 또는 관계 법령에 의하여 고등학교 졸업자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가> 또는 <나>의 조건에 해당하고 제출서류에 결함이 없는 자</p>									

전형	지원 자격	
(정원외)	유형	내용
	가 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호(수급권자), 제2호(수급자)와 제10호에 따른 대상자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대상자
학생부종합 (특성화고등을졸업한 재직자전형) (정원외) *수시미충원시 선발	※ 학생이 속한 세대의 구성원 중 한명이 차상위 계층 대상자인 경우(본인 기준 자격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차상위 가구의 학생) 주민등록등본 상 지원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자가 함께 거주하고 있어야 차상위 계층으로 인정하며 자격에 따른 증명서 외 주민등록등본 1부 및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 또는 모 기준) 등을 추가로 제출해야 함 ※ 기초생활수급권자 또는 차상위 복지급여 수급자 관련 법령개정시, 지원 자격 인정범위는 변경될 수 있음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산업체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 (2023년 3월 1일 기준)(고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 제2항 제14호) 가. 특성화고등학교 등을 졸업한 자 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고등학교(마이스터고) 졸업자 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 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도 교육감이 직업교육 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라. 평생교육법 제31조 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 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산업체 재직기간, 인정범위 유의사항>	
	구분	내용
	재직기간	1) 2023년 3월 1일 기준으로 재직기간 3년 이상 근무해야 함 ※ 재직기간 3년은 1,095일 기준으로 산정(3년×365일=1,095일) 가) 4대 보험 가입 확인서 상의 가입기간만을 재직기간으로 산정하며, 재직한 모든 산업체의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반영함 나) 2개 이상의 산업체에서 재직할 경우 총 재직기간은 합산하여 산정하되, 중복되는 기간은 이중으로 합산하지 않음 다) 현 직장 재직증명서상의 재직기간과 4대 보험 가입 확인서상의 가입기간이 다를 경우 재직증명서상의 재직기간 범위 내에 있는 4대 보험 가입 확인서상의 가입 기간만을 재직기간으로 인정함 2) 2개 이상 산업체에서 재직할 경우 재직기간을 합산하여 3년 이상이 되어야 함 3) 재직기간은 고등학교 졸업일 다음 날부터 근무한 것으로 산정함 4) 원서접수 시작일 현재 휴직(휴업)자는 지원할 수 없음(원서접수일은 모집요강공시) 5) 병역특례 기간의 산업체 경력을 포함하여 군 의무복무 경력은 재직기간 산정에 포함됨
	산업체 인정범위	1)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소속 직원의 경우) 2) 4대 보험 중 1개 이상 가입 사업체(창업·자영업자 포함) ※ 단, 4대 보험 개인(지역)가입자는 지원자격에 해당하지 않음